

제 222 호

1972. 4. 15.

등록번호: 제 39 호
등록년월일: 1953년 6월 18일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인: 공보실장 손완수
인쇄: 새진공사

시 보

이 영과보준 기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필입하였음.
1972. 3. 31.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차 례

규 칙..... 1

고 시..... 4

사 령..... 1

공 고..... 13

서울특별시

시 보 세 분 목 차

1. 규	칙	1
제 1211 호	서울특별시 동직 제증 개정 규칙	1
제 1212 호	서울특별시 시민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제 폐지에 관한 규칙	1
제 1213 호	서울특별시의 구사무 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	1
2. 사	령	1
3. 고	시	4
제 34 호	서울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설결정	4
제 35 호	서울도시계획실시계획확인가 일부변경	5
제 36 호	공유수면대립공사준공기간연장허가	6
제 37 호	도시계획소로신설 및 일부변경	6
제 38 호	사료성분등록	7
제 39 호	도시계획소로일부신설변경	10
제 40 호	서울시도시계획소로신설	10
제 41 호	도시계획시설(정류장)결정	12
제 42 호	도시계획시장시설결정	12
4. 공	고	13
제 60 호	김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계획일부변경	13
제 63 호	환지계획변경	13
제 64 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준공	13
제 65 호	청난금남입고지서공시송달	14
제 66 호	영사기사면허시험합격자발표	14
제 68 호	서울시도시계획소로 일부변경 및 신설	16
제 69 호	" (도로)일부변경	17
제 70 호	하천공직물(복개)설치허가취소	17
제 71 호	하천공직물설치허가효력상실	18
제 72 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18
제 75 호	여의도택지매각입찰공고	19

규 칙

서울특별시동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211 호

서울특별시동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동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지방사세시기"와 "지방사세시기보"를 삭제한다.

제 5 조 제 5 호중 "주거부정리"를 삭제
하고 제 22 호, 제 23 호와 제 24 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 22 새마을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23 주택 및 시민아파트관리에 관한 사항
- 24 향토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1972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아파트 관리사무소직제
폐지에 관한 규칙을 재정하여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212 호

서울특별시 시민아파트관리사무소
직제폐지에 관한규칙
1970년 5월 20일자 서울특별시 규칙제
942 호 서울특별시 시민아파트관리사무소직
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213 호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2 항제 2 호"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새마을가꾸기사업과 부락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72.3.21

지방행정주사보 이 중 환
행정주사보에 임함
5 호봉을 급함

인사과 근무를 명함

◎ 1972.3.22

지방토목기사보 이 형 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에
의거

전책에 처함

지방건축기원보 신 문 섭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에

<p>의거 갑봉 6월에 처함</p>	<p>을지연습 72 실시 단요원 (72.3-4.17 까지) 근무 를 명함</p>
<p>지방간 호기원보 신 승 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에 의거</p>	<p>서 기 관 도 지 훈 을지연습 72 실시 단요원근 무를 해제함</p>
<p>의거 전책에 처함</p>	<p>부 이 사 관 박 용 회</p>
<p>지방보건기원보 이 락 경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에 의거</p>	<p>복직을 명함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 에 보함</p>
<p>갑봉 6월에 처함</p>	<p>◎ 1972.4.1</p>
<p>지방보건기원보 목 소 균 지방토목기원보 송 풍 호 지방수의원보 김 진 영 지방토목기원보 강 태 을</p>	<p>지방행정주사 김 성 태 행정주사에 임함 3 호봉을 급함</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에 의거</p>	<p>공무원교육원근무를 명함 행 정 주 사 김 성 태</p>
<p>전책에 처함 ◎ 1972.3.23</p>	<p>총무과 파견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장 석 준</p>
<p>지방약투기사보에 임함 6 호봉을 급함</p>	<p>이 전 송 성동구 파견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보 왕 계 환</p>
<p>성동구보건소근무를 명함 ◎ 1972.3.25</p>	<p>중 구 파견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사무관 김 용 주</p>
<p>행정사무관 정 태 복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관광과 관광선전계장을 면함 ◎ 1972.4.3</p>
<p>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1 호봉 (근가 1 회) 을 급함</p>	<p>지방전기기원보 채 병 철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p>
<p>서대문구사회과장에 보함 서 기 관 도 지 훈</p>	<p>휴직을 명함 조건부지방의무기좌 이 천 각</p>
<p>공무원교육원강직무대리를 년 하고 교수부장직무대리를 명함</p>	<p>중로구보건소방역과장에 보함 지방의무기좌 이 성 근</p>
<p>부 이 사 관 박 용 회</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 1972.4.6	지방전기 기사 조 용 회
지방행정주사보 정 완 용 마포구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6조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주사보 김 철 삼 자동차정 비상 근무를 명함	1972년 4월 9일 그 직 을 면함 ◎ 1972.4.10
지방행정서기 이 용 목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정 종 원 조건부 지방화공기원에
지방행정주사보 전 인 호 지방행정서기보 권 오 윤	임함 보 광동수원지사무소근무를
라포구 근무를 명함 행 정 주 사 김 태 수	명함 이 경 구
총무과 파견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김 태 수	조건부섭유기원보에 임함 공업과 근무를 명함
행정주사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김 영 준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근무를 명함 ◎ 1972.4.7	3 호봉을 급함 관광과 관광선전계장에
지방행정주사보 교 희 복 지방행정주사 조 윤 제	보함 농 촌 지 도 원 채 희 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	서울특별시진입을 명함 농촌지도원에 임함
에 처함 ◎ 1972.4.8	6 호봉을 급함 농촌지도소 근무를명함
지방행정주사보 이 우 탁 전시국가지도회의본부과전	◎ 1972.4.11 지방행정주사 강 교 민
근무(72.4.6-72.4.17 까지)를 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정 구 역
◎ 1972.4.9 지방건축기원보 박 현 식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 이 남 용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 이 세 회 " 이 경 주
휴직을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92

지방행정주사보 김 준 식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사 오 세 민
 71.4.1 서울특별시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2.1.15 자 감봉 3월처분
 을 감봉 1월로 동일자변경
 처분함
 지방전기기원보 김 용 일
 72.7.31 까지 연료과과결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사 안 재 원
 지방건축기사보 박 응 서
 지방건축기원 조 일 목
 원에 의하여 그직을 명함
 © 1972.4.17
 지방토목기원보 송 근 백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가. 가 로 조 서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 호
 서울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의 주택지(서
 울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성사업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
 시계획과와 성북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72. 3. 23.
 서울특별시 장
 1. 시설명: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2. 위 치: 서울특별시성북구공능동산 53번
 지 및 전 217의 1번지
 3. 면 적: 32,812 (9,943 평)
 4. 사업명칭: 원우회 직원주택 단지조성사업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소 로	3	1	6 미터	728미터	공능동산 53(진입로입구)	공능동산 53(진입로입구)	
		2	"	96	공능동산 53(소3-1 호선)	공능동산 53(소로 1 호선)	
		3	"	66	" (소3-1)	" (소3-1)	
		4	"	61	" (소3-1)	" (소3-1)	
		5	"	190	공능동 217(소3-1)	" (소3-4)	
	4	1	4	110	공능동산 53(소3-1)	공능동산 53(소3-1)	
		2	"	81	"	"	
		3	"	69	"	"	
		4	"	56	"	"	

나. 아동공원조서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공 능 아 동 공 원	서울특별시성북구 공능동산 53	990㎡(300평)	

다. 쓰레기적환장, 주차장시설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쓰레기적환장	서울특별시성북구공능동산53	148.5㎡(45평)	
주 차 장	"	165㎡(50평)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서울특별시 고시제 35 호

서울도시계획시설계획인가일부변경
서울도시계획사업이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하는 동시 사업 구역내의 도로를 도시
가.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 구역

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였기 고시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임
1972. 3.24
서울특별시장

구 분	사 업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쌍문주택단지조성사업	시내성북구쌍문동 265의1외14필지	22,529 평	시설면적 22,529평
변 경	"	시내성북구쌍문동 265의1외11필지	19,154 "	

나. 가 로 시 설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소 로	2	8-1	8미터	370미터	쌍문동 452	쌍문동산 261-4	
"	3	6-1	6-4	312	쌍문동산 256 의 1	"	
"	3	6-2	6	166	소-2-8	쌍문동산 256-1	
"	3	6-3	6	166	"	" 249	
"	4	5-1	5	50	쌍문동산 262	쌍문동산 262	
"	4	4-1	4.5	40	" 산 261-1	" 262	
"	4	4-2	4	73	"	"	
"	4	4-3	4	76	"	쌍문동산 256 의 1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소 로	4	4-4	4	120	쌍문동산 256 의 1	쌍문동산 262	
"	4	4-5	4	120	"	"산 256 의 1	
"	4	4-2	4	73	쌍문동산 261 - 1	"산 262	
"	4	4-3	4	76	"	"산 256 의 1	
"	4	4-4	4	120	쌍문동산 256 의 1	"산 262	
"	4	4-5	4	120	"	"산 256 의 1	
"	4	4-6	4	122	쌍문동산 256 의 1	쌍문동 256 의 1	
"	3	6-4	6	80	"	" 460 의 19	
"	3	6-5	6	27	소로 6 - 3 호선	" 460 의 18	
"	3	6-6	6	20	쌍문동산 261 - 1	" 459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 호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기간연장허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허가 하였기 공유수면매립시행
령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1972 년 3 월 28 일

서울특별시장

- 1. 연장허가년월일 72.3.28
- 2. 매립면허년월일 69.2.17

3. 허가받은자의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 92 번지
현대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정주영

4. 매립장소 및 면적

서울특별시성동구압구정동 336 번지지선
174.702 평방미터 (52.940 평)

5. 매립 목적

공장부지조성

6. 면장허가기간

72.4.9. - 72.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 호

도시계획소로신설및일부변경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소로신설일부
변경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3. 도시계획소로신설 및 일부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6M	900M	행당동 95-1	응봉동 191-2	
"	"	"		"	180	신설동 402-1	신길동 410-1	
기정	"	"		"	130	수유동 468-136	수유동 491-15	위치일부변경
변경	"	"		"	80	"	" 491-9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1972.3.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고시제 38 호

같이 고시함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10 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1972.3.30.

서울특별시

사료 성분 등록 사항

등록 번호	공장 명	소재지 대표	사 료	사료 성분량				유효 기간	비 고			
				최 소 량	최 대 량	부 터 가 지						
		성명	종 류	명 칭	용 도	조 단 백 질	조 지 방	조 섴 유	조 회 분	부 터 가 지		
3-1	유경사 료 공 업사	동대문구 계기동 998	유시련	배합사료	부로일러 후기 배 합 사료	부화후대 략 4주이상	16.0%	2.5%	6.0%	10.0%	1972. 3.30 1974. 3.29	사료관 리법시 행규칙 제 7 조 에 의거 갱신
3-2	"	"	"	"	성 계 용 배합사료	산 란 초 기 용	15.0%	2.0%	8.0%	13.0%	"	"
3-3	"	"	"	"	중병아리 배합사료	부화후대 략 7-12 주	16.0%	2.5%	7.0%	10.0%	"	"
3-4	"	"	"	"	어린 병아 리 배합 사료	부화후대 략 6 주까지	19.0%	2.5%	6.0%	9.0%	"	"
3-5	"	"	"	"	젓 소 용 배합사료	생후대 략 18개월이상	13.0%	2.0%	3.0%	12.0%	"	"
3-6	"	"	"	"	씨 돼지 용 배합사료	생후대 략 9개월이상 또는 씨 돼지	12.0%	2.0%	1.0%	11.0%	"	"
3-7	"	"	"	"	성 계 용 배합사료	산 란 중 기 용	15.0%	2.0%	8.0%	13.0%	"	"
3-8	"	"	"	"	성 계 용 배합사료	부로일러 중 계 용	16.0%	2.5%	6.0%	10.0%	"	"
3-9	"	"	"	"	"	산 란 말 기	15.0%	2.0%	8.0%	13.0%	"	"
3-10	"	"	"	"	부로일러 후기 배 합 사료	부화후대 략 4주이상	16.0%	2.5%	6.0%	10.0%	"	96

0850

등 번	록 호	공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사 료			사 료 성 분 량				유 효 기 간	비 고
			성명	종 류	명 칭	용 도	최 소 량	최 대 량	조 단 백 질	조 지 방	조 섬 유		
3-11		영유농장 사료공장	동대문구 신내동 528	김영희	배합사료	어린병아리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6주까지	19.0%	2.5%	6.0%	9.0%	1972.3.30 1974.3.29	사료관리법시행 규칙 제 7 조에의 거 갱신
3-12		"	"	"	"	중 병아리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7~12주	16.0%	2.5%	7.0%	10.0%	"	
3-13		"	"	"	"	성계용배합사료	산란중기	15.0%	2.0%	8.0%	13.0%	"	
3-14		"	"	"	"	"	산란말기	15.0%	2.0%	8.0%	13.0%	"	
3-15		"	"	"	"	큰 병아리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13주초산까지	12.0%	2.5%	7.5%	10.0%	"	
3-16		"	"	"	"	성계용배합사료	부로일터 종 계 용	15.0%	2.0%	8.0%	13.0%	"	
3-17		"	"	"	"	젖소용배합사료	생 후대략 18개월이상	13.0%	2.0%	13.0%	12.0%	"	
3-18		"	"	"	"	성계용배합사료	산란용종계	15.0%	2.0%	8.0%	13.0%	"	
3-19		"	"	"	"	"	산란초기	15.0%	2.0%	8.0%	13.0%	"	
3-20		"	"	"	"	부로일터진기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4 주까지	19.0%	2.5%	6.0%	9.0%	"	
3-21		중앙축산사 료주식회사	동대문구 상봉동 320	강태현	"	중 병아리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7~12주	16.0%	2.5%	7.0%	10.0%	"	
3-22		"	"	"	"	큰 병아리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13주~초산	12.0%	2.5%	7.5%	10.0%	"	
3-23		"	"	"	"	부로일터후기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4 주이상	16.0%	2.5%	6.0%	10.0%	"	
3-24		"	"	"	"	어린 병아리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6 주까지	19.0%	2.5%	6.0%	9.0%	"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사료			사료 성분량				유효기간	비고
		대표	성명	종류	명칭	용도	최소량		최대량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부터 까지	
3-25	중앙축산사 료주식회사	동대문구 상봉동 320	강태현	배합사료	성계용배합사료	산란초기	이상 15.0%	이상 2.0%	이하 8.0%	이하 13.0%	1972.3.30 1974.3.29	사료관리법시 행규칙 제 7조 에 의거 갱신
3-26	"	"	"	"	부로일려 전기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4주까지	19.0%	2.5%	6.0%	9.0%	"	"
3-27	"	"	"	"	젖소용배합사료	생후대략 18개월이상	13.0%	2.0%	13.0%	12.0%	"	"
3-28	"	"	"	"	씨돼지용 배합사료	생후대략 9개월 이상되는 씨돼지	12.0%	2.0%	11.0%	11.0%	"	"
3-29	한일사료공 업주식회사	동대문구 상봉동 350-6	차두홍	"	증병아리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7~12주	16.0%	2.5%	7.0%	10.0%	"	"
3-30	"	"	"	"	어린병아리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6주까지	19.0%	2.5%	6.0%	9.0%	"	"
3-31	"	"	"	"	큰병아리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13주~초산	14.0%	2.5%	7.5%	10.0%	"	"
3-32	"	"	"	"	성계용배합사료	산란말기	15.0%	2.0%	8.0%	13.0%	"	"
3-34	"	"	"	"	"	산란전기	16.0%	2.0%	8.0%	13.0%	"	"
3-35	"	"	"	"	"	산란용증제	16.0%	2.0%	8.0%	13.0%	"	"
3-36	"	"	"	"	젖소용배합사료	생후대략 18개월이상	13.0%	2.0%	13.0%	12.0%	"	"
3-37	"	"	"	"	씨돼지용 배합사료	생후대략 9개월 이상되는 씨돼지	12.0%	2.0%	11.0%	11.0%	"	"
3-38	"	"	"	"	젖소용배합사료	생후대략 18개월이상	13.0%	2.0%	13.0%	12.0%	"	"

시 보 (제 222 호)

0851

21-11

◎서울특별시 고시 제39 호

고시합

도시계획소로일부신설결정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소로일부신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설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게 보임

2) 노선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2		6 M	754 M	성북구하일길, 동40번지	성북구하일곡12번지	

1972.4.3

서울특별시장

3) 도면 ; 별첨

◎서울특별시 고시 제40 호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업인 도시계획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

도로신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

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1972.4.6

함.

서울특별시장

노 선 신 설 조 서

1. 이화·충신지구 (2개지구)

구분	로별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1	4 ^M -8	105 ^M	이화동 9 - 5	이화동 9 - 207	루푸시설
"	"	4	1	4	192	충신동 1 - 281	충신동 1 - 211	
"	"	4	2	"	144	" 1 - 167	이화동 9 - 220	
"	"	4	3	"	212	" 1 - 142	" 9 - 118	
"	"	4	4	"	62	이화동 9 - 209	" 9 - 220	

2. 제기2동지구

구분	소로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2	1	8 M	58 M	제기2동 122-58	제기2동 122-49	
"	"	3	1	6	386	중암대교	제기2교	
"	"	4	1	4	52	제기2동 122-246	정 능 천	
"	"	"	2	"	48	" 122-210	"	
"	"	"	3	"	40	" 122-247	"	
"	"	"	4	"	31	" 122-245	"	
"	"	"	5	"	30	" 122-64	"	

3. 신설동지구

구분	로별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1	6 ^M	300 ^M	안암교	용두동	
"	"	3	2	6	20	소3-1	신설동 92-27	
"	"	4	1	4	20	"	" 92-27	
"	"	3	3	6	38	"	" 93-2	

4. 신당3동지구

신설	소로	3	1	6	160	신당3동 366-88	신당3동 372-1966	
"	"	4	1	4	420	" 366-335	" 372-1359	
"	"	4	2	4	60	" 372-1966	" 372-1355	

5. 신당7동지구

신설	소로	4	3	4	48	신당7동 80-124	신당7동 80-223	
"	"	4	2	4	115	" 80-307	" 80-367	
"	"	4	1	4	68	" 75	" 80-321	

6. 하왕십리 2동 24 지구

신설	소로	3	1	6	190	하왕십리2동 1023-5	소3-2	
"	"	3	2	6	330	" 1000-158	소3-1	
"	"	3	3	6	90	" 999-6	하왕2동 1000-54	
"	"	3	4	6	290	" 소3-3	" 1034	
"	"	3	5	6	200	하왕2동 890-29	" 999-24	
"	"	4	1	4	75	" 1000-469	" 508	
"	"	4	2	4	40	" 1000-138	" 1000-121	
"	"	4	3	4	46	" 890-183	" 890-334	

7. 대한지구

기정				4	300	염리동 8-152	염리동 8-264	
확장	소로	3	1	6				

8. 효창제 1 지구

구분	로별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 설	소 로	3	1	6 ^M	190 ^M	효창동 3 - 52	효창동 3 - 152	
"	"	3	2	6	190	" 1 - 142	" 3 - 55	
"	"	4	1	4	85		소 로 3 - 1	
"	"	4	2	4	35	소 로 3 - 1	효창동 3 - 160	

9. 노량진지구

신 설	소 로	3	1	6	272	노량진동 202-181	노량진 동 315-2	
"	"	4	1	4	401	" 301-215	" 294-66	
"	"	4	2	4	145	" 302-12	" 202-101	
"	"	4	3	4	115	" 202-8	" 264-16	
"	"	4	4	4	65	" 202-185	" 294-71	
"	"	4	5	4	110	" 294-76	" 산 80	
"	"	4	6	4	90	" 315-3	" 산 134	

◎서울특별시 고시제 41 호
 도시계획시설 (정류장) 결정
 자동차 (시외버스) 정류장 시설결정
 1. 서울특별시 관내도시계획시설 정류장
 시외버스 시설결정을 도시계획법 제 2 조
 2. 시설조서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용산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남부자동차 (시외버스) 정류장	용산구한강로 3 가 65-9 (외 8 필지)	7.169 ㎡ (2,172 평)	

3. 도면 ; 별첨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1972.4.6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고시제 42 호
 도시계획시장시설결정
 1. 도시계획시장시설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및 동법제 1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함

도시계획과 및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3. 시장시설조서			계 보임	
구 분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m ²)	비 고
시 장	시 장	용산구한강로 2가 16-1 외 24 필지	17,050	시장시설용지
별첨관계도면참조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1972.4.8 서울특별시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공 고</div>			사. 시행인가변월일 1968.1.23. 건설부공고제 8 호 1972.3.24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60 호 김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일부변경 1.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계획의 일부 변경을(건설부 공고제 21호 72.3.10) 토지구획정리사업 제 34 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관계서류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제 1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인 에게 보임 가. 사 업 명 김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당 초 면 적 5,342,695.12 다. 변 경 면 적 4,775,935.54 라. 사 업 지 구 영등포구 화곡동, 동촌동, 목동, 가양 동, 염창동, 내의발산동, 각 1 부 마. 시 행 기 간 1968.1.23 - 1973.12.31 바.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고제 63 호 환 지 계 획 변 경 1. 신림, 김포, 역촌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동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로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임 2.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 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있음 1972.3.27.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64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준공 1. 서울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조 성사업이 다음과 같이 인가내용대로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46 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고함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및				

성동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72.3.27

서울특별시

가. 사업 집행지

서울특별시성동구명일동산 4번지

나. 사업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다. 사업면적

3,915 평

라. 사업 집행자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가50번지
중앙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시구

마. 사업기간

착공 1971년 12월 30일

준공예정년월일 1972년 3월 30일

바. 준공년월일

1971년 3월 27일

사. 준공도면

별첨도면(생략)

라. 사업 집행자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가50번지
중앙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시구

마. 사업기간

착공 1971년 12월 30일

준공예정년월일 1972년 3월 30일

바. 준공년월일

1971년 3월 27일

사. 준공도면

별첨도면(생략)

◎서울특별시 공고제 65호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

1. 청산금 납입 고지서를 각 납입 의
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취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5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주소 또는 거소 성명;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 48 김사열외 34명
(별첨 조서 참조)

구 분 ;

청산금납입고지서 72년수시분

가. 납부기간

72.4.15. 까지

나. 납부장소

당시도시계획국서무과

1972.3.29

서울특별시 양 택 식

◎서울특별시 공고제 64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준공

1. 서울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다음과 같이 인가 내용대
로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72.3.27

서울특별시

가. 사업 집행지

서울특별시성동구명일동산 4번지

나. 사업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다. 사업면적: 3,915 평

수 납 번호	물 건 지	금 액	소 유 자	
			현 주 소	성 명
199	도봉동 250-34	139,800	돈암동 48	金 思 烈
205	" 206-14	64,607	도봉동 206-14	金 正 伊
207	" 206- 4	102,018	" 206-4	변 경 환
208	" 206-17	85,239	보문동 5가 159	李 四 姬
209	" 206- 1	151,285	도봉동 206-1	金 仁 淑
219	" 212外 1 필	68,565	" 212	이 용 준
232	" 282-58外 1	71,026	창성동 116-2	박 무 경
245	" 231- 4	195,242	도봉동 231-4	金 敬 培
249	" 282-68	59,438	동소문동 5가 59, 삼선동 4가 107	金福林, 金榮俟
249	" 282-77	53,777	"	"
249-1	" 282-76	55,192	"	"
249-1	" 282-75	44,578	"	"
249	" 282-71	13,839	"	"
249	" 282-70	4,245	"	"
249	" 282-69	55,192	동소문동 5가 59	全福林外 1 인
249	" 282-78	53,777	"	"
262	" 284-6外 1	7,072	보문동 1가 151	김 상 빈
265	" 284-10	103,748	수유동 567-15	李 貞
279	" 149- 3	93,335	도봉동 149-3	한옥동의 2 인
281	" 153-3外 1	9,090	동소문동 2가 44	오득현의 2 인
284	" 92-77	120,268	도봉동 92-77	林 雨 竜
301	" 91-97	174,200	도봉동 97-97	김 신 태
303	" 91-58	41,667	" 91-58	이 명 우
306	" 91-60	13,649	" 91-60	박 용 희
312	" 91-66	11,315	" 91-66	이 명 규
313	" 91-69	32,472	" 91-31	김 의 화
322	" 91-77	17,618	" 91-77	이 청 자
324	" 91-78	36,164	번 동 405	채 갑 순
345	" 91-30	26,251	도봉동 91-30	고 양 순
359	" 91-19	322,588	동송동산 2	호 문 영
360	" 91-23	342,440	도봉동 91	박 영 호
368	" 91-25	173,040	" 91-25	박 길 석
220	" 214-1,2	8,852	미 상	미 상
287	연 회동 224-34	11,059	염리동 9 - 36	유 정 율
계	34 건	2,762,648		

◎서울특별시 공고제 66 호

영사기사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서울특별시 제 1 회 영사기사 면허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응시 번호	성 명	응시 번호	성 명
1	강 현 재	80	박 응 재
3	임 용 익	84	박 용 익
4	이 우 식	85	양 재 강
11	김 남 철	107	장 금 수
19	정 한 길	115	곽 순 봉
22	강 용 운	118	김 종 단
31	김 정 재	139	한 만 회
39	오 흥 덕	140	서 병 주
52	유 영 수	152	이 상 관
53	박 상 원	153	이 용 국
61	조 세 동	154	조 용 철
77	김 주 영	계; 23명	

: 0 : 위 합격자는 1972.4.1-4.15 합격증을 발급하니 사진 (3 × 4) 2매를 지참 합격증을 수령 하시기 바람

1972.3.30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공고제 68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도로)

일부변경 및 신설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 (도로) 일부

변경 신설결정 (건설부 고시제 78 및 79

호 (72.3.6) 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 12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함.

가. 노 선 조 서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

시계획과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72.3.23

서울특별시 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중 로	1	9	20M	4.800 ^M	휘경동지서앞	미 아 동	
변 경	중 로	1	9	20	4.800	"	"	휘경동지서앞 가각전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2	33	30 ^M	17.800 ^M	양재동	상일동	대곡로 일부 50미터로 확폭 노폭 5미터 확폭
변경	대로	2	33	30	9.800	장지동	상일동	
변경	광로	1	33	50	8.000	양재동	장지동	
기정	중로	2	113	15	500	가리봉동	가리봉동	
변경	중로	1	142	20	500	"	"	
신설	대로	2	45	30	2.800	개포동	내곡동	
신설	중로	3	80	12	600	만리동 2가	청과동 2가	

나. 광장 조서

구분	번호	위치	면적	종류	비고
신설	38	성동구 내곡동 134	12,000 m ²	능형	교통광장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서울특별시 공고제 69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도로)일부변경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도로일부변경
 (건설부고시제 57 호 72.2.17)을 도시
 계획법 제12조 및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함
 노선 조서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
 계획과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72.3.23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1	13	36-69 ^M	310 ^M	상월곡동7-135	석관동371-113	총연장9.500미터 중확폭부분동일로 폭으로 축소
변경	대로	1	13	35	310	"	"	
신설	중로	3	65	12	26	석관동 342-1	석관동342-1	잔여1400는구리 도시계획으로이미결정
기정	대로	1	15	30-35	9,500	중량교	미금민삼거리	
변경	대로	1	15	35	8.100	"	망우동서울시계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서울특별시 공고제 70 호
 하천공직물(복개)설치허가취소

하천공직물(복개)설치허가를 아래와 같
 이 취소하였으므로 하천법시행령제 1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1972.4.3

서울특별시

가. 하 천 명 성북천

나. 허 가 장 소

동대문구보문동7가143 용두동232

번지사이하천(대광고교앞)

다. 허 가 목 적

하천복개후 상가아파트 건립

라. 공 사 내 용

복개면적 3,546평 연장 516메타

폭 20메타

마. 허 가 년 월 일 70.5.18

바. 허가받은자의 주소·성명

중구에장동8-3 김 만 용

사. 취 소 년 월 일 72.4.3

아. 취 소 사 유

하천법제 68조1항 위반

사. 취 소 근 거

하천법제 67조1항 및 허가조건

제 8항라호

◎서울특별시 공고제71호

하천공직물설치허가효력상실

하천공직물설치허가의 효력상실을 하천

법 제 70 조제 1 항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72.4.4

서울특별시 양 택 식

1. 허 가 장 소

서울특별시성북구정능동649-13번지앞

2. 허 가 규 모

복개길이=26M, 폭=3M, 높이=2.8M

3 런

3. 허 가 목 적

출입통로개설

4. 실 효 일 자

72.2.19

5. 허가받은자의 주소·성명

서울특별시성북구정능동881-11번지

이 종 극

6. 실 효 사 유

착공기한내공사미착공

◎서울특별시 공고제72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 결정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지변경(취소)교육 및 연

구지구,미관지구결정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

변경이 건설부고시제50호(72.3.14.)로 결

정고시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관계도서를 서울특별

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

1972.4.4

서울특별시

가. 용도지역변경조서: 별첨

나. 미관지구결정조서: //

다. 교육 및 연구지구결정조서: 별첨

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변경(취소)결정

조서: 별첨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시민

과 및 성동구청·영등포구 시민봉사

실에 보관

가. 용도지역변경조서				단위 ;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주거 지역	401,324,562	(-) 8,160,000	393,164,562	
상업 지역	17,055,000	-	17,055,000	
준공업지역	57,079,038	(-) 1,725,000	55,354,038	
녹지 지역	245,417,400	9,885,000	255,302,400	
계	720,876,000		720,876,000	

나. 미관지구결정조서		
위 치	면 적	비 고
엄곡동,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세곡동, 자곡동, 울현동	10,190,000	집단미관지구

다. 교육 및 연구 지구 결정조서		
위 치	면 적 ()	비 고
영등포구 봉천동	3,530,000	

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변경(취소)결정조서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내곡토지구획정리 사업지	내곡, 세곡, 신원, 울현, 장 지동 일부	10,041,000	취 소

◎서울특별시 공고제 75 호

여의도택지매각입찰공고
 다음포시 여의도택지 재산을 지방재정
 법 제 52 조에 의거 일반 공매함
 1. 입찰 장 소: 당시 재무국입찰실
 2. 입찰등록일시: 1972.4.20.18:00까지
 3. 입찰일시: 1972.4.21.12:00까지
 4. 입찰 등록
 입찰등록일시내에 당시 재무국 판리

과에 등청하시여 입찰등록서를 교부받
 으신후 소정 기재 사항 기입후 등록
 접수하시고 접수증을 교부받으셔야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액의 100분의 10 이상 해당금
 액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까지 필히
 입찰자의 명의로 한국상업은행사금고
 에 예치한후 예치증을 입찰보증금
 납부서와 동봉하여 투찰하여야함

나. 유찰자의 보증금(예치증)은 입찰일 익일부터 반환함

6. 매매계약 및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국세, 시세, 납세필증과 수입인지(10원권 6매)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대금납부는 3개월간 3회분할납부할 수 있음

다. 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

9. 매각재산의 표시

거나 지정된 납부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7. 재산매각후 평소에 증감이 생할 경우에는 당시가 정하는 가격으로 추납 또는 반환함

8. 도면 열람이나 기타 상세한 것은 당시 관재과(75.6836)에 문의하시기 바람

지 구 별	부 호	필 지 수	평 수	비 고
상업지구	1 열	19 필지	10,302 평	필지당 800 평단위 2 필지
"	2 열	10 필지	5,095 평	" 700 " 15 "
"	4 열	54 필지	17,518 평	" 600 " 6 "
"	5 열	66 필지	19,176 평	" 500 " 18 "
"	6 열	38 필지	16,716 평	" 400 " 55 "
"	7 열	7 필지	3,182 평	" 300 " 28 "
"	8 열	16 필지	8,073 평	" 200 " 86 "
주거지구	5 열	11 필지	951 평	" 100 " 22 "
"	6 열	11 필지	1,638 평	
계		232 필지	82,651 평	

(필지별 재산목록은 당시 관재과에서 배부함)

여의도 택지의 이점

1. 생활여건이 완비된 도시가 된다

가. 전력전화가스 상수도등이 완비된다

나. 생활필수품판매장국민학교가 500미터 이내에 설치 된다

2. 교통이 편리하며 모든 도로가 완전 포장된다

1972.4.6

서울특별시장 양택석

가. 여의도를 중심으로한 모든방면에 통행이 자유롭고 시간이 단축된다

나. 로폭 100, 50, 35, 25, 20미터의 모든 드로는 완전포장되며 교통량을 일방 통행으로 완전 처리한다

3. 수도권외 중심지가 된다

가. 국회의사당, 시청등을 비롯한 각급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들어서게 되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나. 강변도로와 순환도로의 개통으로 인천, 수원, 김포의 정부춘천방면이 연결되어 여의도가 수도권 중심지가 된다.

4. 도시공해의 염려가 없다

가. 모든 공급처리 시설을 지하공동구에 설치하며 지상에 건주가 없는 도시가 된다
나.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 하수와 오수를 분리 처리한다

5. 정서가 깃드는 상촌도시가 된다

9. 매각재산의 표시 (여의도택지)

가.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운중계는 잔디와 벚나무를 그리고 광장 녹지대는 향나무를 심어 상촌도시를 만들며 여러개의 공원을 만들어 시민휴양시설을 갖추어 정서가 깃드는 꿈에 도시가 된다

나. 한강하류에 서울뚝을 건설하여 이상적인 수중도시를 만든다

6. 마련하기가 쉽다

가. 도심으로부터 근거리내 위치하면서 가격이 저렴한다
나. 용도사업구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재 산 의 표 시				평 수	재 산 의 표 시				평 수
지구별	열	구획	호		지구별	열	구획	호	
상	1	1	3	700	상	2		10	535
"	1	1	4	700	"	2		11	540
"	1	1	5	700	"	2		12	700
"	1	1	6	700	"	2		13	530
상	1	2	1	812	상	4		1	839
"	1	2	2	406	"	4		2	768
"	1	2	3	406	"	4		3	768
"	1	2	8	406	"	4		4	768
"	1	2	9	406	"	4		8	530
"	1	2	10	737	"	4		9	240
"	1	2	11	773	"	4		10	240
"	1	2	16	450	"	4		11	240
"	1	2	17	406	"	4		12	240
"	1	2	18	300	"	4		13	240
"	1	2	19	406	"	4		14	240
상	1	3	1	776	"	4		21	405

재 산 의 표 시				평 수	재 산 의 표 시				평 수
지구별	열	구획	호		지구별	열	구획	호	
상	1	3	2	406	상	4		22	405
"	1	3	6	406	"	4		23	405
"	1	3	18	406	"	4		24	405
상	2		1	445	"	4		25	450
"	2		2	430	"	4		27	240
"	2		3	420	"	4		28	240
"	2		4	420	"	4		29	240
"	2		8	540	"	4		30	240
"	2		9	535	"	4		31	240
상	4		32	240	"	4		62	240
"	4		33	240	"	4		63	409
"	4		36	240	"	4		65	405
"	4		37	240	"	4		66	405
"	4		38	240	"	4		67	405
"	4		39	240	"	4		68	405
"	4		40	240	"	4		69	405
"	4		41	240	상	5		2	382
"	4		42	240	"	5		3	382
"	4		43	473	"	5		4	382
"	4		45	240	"	5		6	382
"	4		46	240	"	5		8	228
"	4		47	240	"	5		9	228
"	4		48	240	"	5		10	228
"	4		49	240	"	5		11	228
"	4		50	240	상	5		1	300
"	4		51	240	"	5		2	254
"	4		52	240	"	5		3	290
"	4		53	228	"	5		4	254
"	4		55	240	"	5		7	300
"	4		56	240	"	5		9	254
"	4		57	240	"	5		10	254

지 산 의 표 시				평 수	재 산 의 표 시				평 수
지구별	연	구획	호		지구별	연	구획	호	
상	4		58	240	상	5	2	11	254
"	4		59	240	"	5	2	12	254
"	4		60	240	"	5	2	17	300
"	4		61	240	"	5	2	19	254
상	5	2	20	254	상	5	3	23	254
"	5	2	21	300	"	5	3	24	254
"	5	2	22	300	"	5	3	25	300
"	5	2	23	258	"	5	3	26	290
"	5	2	24	250	"	5	3	27	254
"	5	2	25	300	"	5	3	28	254
"	5	2	26	258	"	5	3	29	300
"	5	2	27	254	상	5	4	2	245
"	5	2	28	254	"	5	4	3	245
"	5	2	29	300	"	5	4	4	245
"	5	2	30	254	"	5	4	5	245
"	5	2	31	254	"	5	4	6	245
"	5	2	32	300	"	5	4	7	245
상	5	3	1	300	"	5	4	8	320
"	5	3	2	254	"	5	4	9	414
"	5	3	4	254	"	5	4	10	414
"	5	3	7	300	"	5	4	11	414
"	5	3	9	254	"	5	4	12	414
"	5	3	10	254	"	5	4	13	414
"	5	3	16	254	"	5	4	14	414
"	5	3	17	254	"	5	4	15	530
"	5	3	18	300	상	6		2	653
"	5	3	19	254	"	6		3	653
"	5	3	20	254	"	6		4	653
"	5	3	21	300	"	6		5	653
"	5	3	22	290	"	6		6	653
"	5		8	650	상	6		53	514

0858

재 산 의 표 시				평 수	재 산 의 표 시				평 수
지구별	열	구획	호		지구별	열	구획	호	
상	6		9	435	상	6		54	491
"	6		10	435	"	6		55	491
"	6		11	435	"	6		57	472
"	6		12	435	"	6		58	415
"	6		13	435	상	7		22	782
"	6		16	363	"	7		23	720
"	6		17	363	"	7		24	720
"	6		18	363	"	7		30	240
"	6		19	363	"	7		31	240
"	6		20	363	"	7		32	240
"	6		21	529	"	7		33	240
"	6		26	544	상	8		8	430
"	6		27	544	"	8		9	450
"	6		30	306	"	8		10	450
"	6		31	306	"	8		11	450
"	6		32	306	"	8		12	450
"	6		33	472	"	8		13	450
"	6		34	419	"	8		14	450
"	6		35	272	"	8		15	415
"	6		36	272	"	8		16	530
"	6		37	272	"	8		17	540
"	6		44	419	"	8		18	540
"	6		45	272	"	8		19	540
"	6		46	272	"	8		20	540
"	6		50	402	"	8		21	540

개 산 의 표 시				평 수	개 산 의 표 시				평 수
지구별	열	구획	호		지구별	열	구획	호	
상	6		51	402	상	8		22	540
"	6		52	419	"	8		23	758
주거지	5	4	2	91					
	5	4	3	65					
	5	4	6	80					
	5	7	1	95					
	5	9	1	61					
	5	9	2	86					
	5	9	3	67					
	5	9	4	89					
	5	9	5	142					
	5	9	8	77					
	5	9	9	98					
	6	5	10	144					
	6	5	11	144					
	6	6	4	144					
	6	6	5	186					
	6	6	9	144					
	6	7	3	144					
	6	7	4	144					
6	7	9	174						
6	8	3	144						
6	8	4	120						
6	8	7	150						
	합계	22필지		2,589평					
총 계		232 필지		82,651 평					